## 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	관 의	장
람			



제685호 2012년 3월 19일(월)

공 고

○ 신조 및 폐기 공인공고------ 2

회 람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속초시공고 제 2012 - 190호

공 고

속초시 공인조례 제9조(공고)의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3월 19일

속 초 시



- 1. 공인 신조 및 폐기 사유
  - 공인의 회계관직 변경(경리관→관리자)
- 2. 신조 공인명 및 인영 : 신조 1개, 폐기 1개

구분	공 인 명	인 영	서체 및 규격	최초사용/폐기 년월일	비고
신조	속초시수질환경사업소 속초시하수도사업특별 회계관리자인 (하수행정담당)	속초시하 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인	한글 훈민정음체 2.0cm 정방형 (목재)	2012. 03. 16.	속초시수질환경사업소 속초시하수도사업특 별회계관리자인 (하수행정담당)
폐기	속초시수질환경사업소 속초시하수도사업특별 회계경리관인 (하수행정담당)	后所可以 后所可以 后 后 后 后 后 后 后 后 后 后 后 后 后	한글 전서체 2.0cm 정방형 (목재)	2012. 03. 16.	속초시수질환경사업소 속초시하수도사업특 별회계경리관인 (하수행정담당)